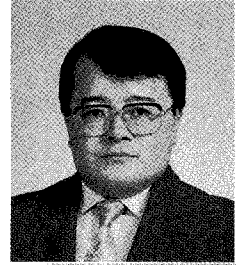


2000年度

獸醫衛生施策



李 周 浩

農林部 家畜衛生課 課長

I. 글을 시작하며

금년은 20세기를 끝내고 새천년(New Millennium)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한해이다. 국내적으로도 民族史의 最大 國恥중 하나로 기록될 IMF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족중흥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이고, 세계적으로는 인터넷시대, 知識産業의 시대에 競爭優位를 잡기 위하여 모든 국가 및 기업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게 될 한 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한해동안 獸醫行政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년에는 더 많은 변화와 하여야 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을 정리함으로써 새천년 첫해에 獸醫政策方向을 밝혀 독자들의 理解를 돕고 共感帶를 넓혀 모두 함께 하는 獸醫政策이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WTO체제하의 國際化 開放化 時代에 축산물도 無限競爭時代에 돌입함에 따라 畜産分野

競爭力提高事業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축산시설의 규모화 등 하드웨어측면에서는 선진 축산업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소프트웨어측면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식육중 대장균 O-157:H7, 다이옥신 오염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축산물의 安全性 문제는 축산업 자체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健康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消費者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서 畜産食品의 生産 流通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畜産物衛生管理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여건변화에 반영하고 새천년을 준비할 수 있는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畜産物安全性 確保對策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특히 '98년 6월 畜産物衛生管理業務一元化이후 지난 성과와 문제점을 分析 評價하여 앞으로의 축산물 위생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결국 국민과 함께 하는 生命産業으로서의 안전한 畜産食品産業을 育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主要 業務 評價 및 向後 推進 計劃

1. 畜産物 衛生管理

① 推進 成果

畜産物衛生管理業務의 一元化로 原料生産부터 最終販賣段階까지(Farm to Table)에 걸친 一貫된 衛生管理體系를 構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도축검사는 1919년 屠殺場規則(朝鮮總督府令 184號)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1962년 畜産物加工處理法이 食品衛生法과 함께 제정되면서 식육, 우유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종합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1984년 畜産物加工品에 대한 위생관리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이원화되었다.

원료축산물은 농림부가, 축산물의 加工 流通 販賣段階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는 축산물의 효율적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개정 논의가 1994년 2월부터 3년동안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行政刷新委員會에서 축산물 위생관리업무의 一元化를 논의한 결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최종 의결하였고, 1997.12.13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농장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Farm to Table) 농림부로 일원화하였다.

畜産物 衛生管理體系를 先進化 科學化하였다.

우리부는 축산물위생관리체계의 선진화 과학화

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몇가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畜産物作業場의 施設基準, 營業者 및 從業員 遵守事項등 작업장 衛生管理基準를 강화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97.12.13) 축산물작업장 시설기준을 미국, EU등 선진국 및 Codex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作業 施設 裝備 및 從業員의 衛生狀態이기 때문이다.

둘째, 축산식품의 安全性確保 측면에서 가장 效率的이고 科學的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인정되어 미국등 주요 선진국가에서 도입 적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제도는 축산물 생산의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생상 危害要素를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하는 위생관리기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축장은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작업장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의무적용되며, 축산물가공장은 食肉加工場(햄류 소시지류) 및 乳加工場(우유 발효유 자연치즈 가공치즈)에 우선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모든 畜産物作業場에 自體衛生管理基準(SSOP)을 義務適用토록 하였다. 위생관리기준(SSOP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위하여 作業前, 作業中 및 作業後에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衛生基準으로서 모든 작업장은 동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자는 매일 점검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飼育段階에서 畜産食品의 안전성 측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動物藥品의 汚濫用 문제 및 사료에 대한 위생관리이므로 정부는 그동안 동물약품 오 남용 및 安全使用對策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고, 사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검정대상 항목을 96년 57개 항목에서 98년은 12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畜産物 特性에 맞는 效果的인 安全管理體系 構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물과 관련하여 공중위생문제가 발생될 경우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해결 체계(Trace-Back System)를 구축하여 한 차원 높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91년부터 전국적인 식육중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National Residue Monitoring Plan)를 실시하여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抗生物質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96년부터는 畜産食品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O157:H7과 같은 병원성미생물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식육중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잔류물질의 경우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 원인유발농장을 추적하여 당해 농장을 特別管理農家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해당 제품은 廢棄處分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병원성미생물의 경우 작업장의 위생상태 평가 및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감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輸出·入 畜産食品 檢疫 檢査體系 一元化로 衛

生管理能力이 向上되었다.

1998년 8월 1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초로 “中央畜産物衛生管理機關”으로서 國立動物檢疫所와 獸醫科學研究所가 통합하여 國立獸醫科學檢疫院이 출범하고,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第1·2段階(‘92~’97) 檢疫機能強化事業 및 제3단계(‘98~2000) 檢疫 檢査機能強化事業 추진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생관리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전염병검사항목이 92년 22항목에서 98년 96개 항목으로, 잔류물질의 경우 동기간중 12항목에서 132항목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대일수출돈육반송율도 0.9%에서 0.1%로 크게 감소하였다. 참고로 畜産物衛生管理一元化 이후 위생관리 主要指標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던 때와 비교하면 不合格率이 식육 알가공품은 0.4%에서 5.3%로, 유가공품은 0%에서 3.2%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느 의미에서 중요위해가능품목에 대한 위생관리가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미흡한 점

畜産物 衛生管理餘件 變化에 附合되는 規定整備가 여전히 未洽하다.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농림부로 일원화된 지 1년반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용란, 족발, 보쌈등 기타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규정 정비가 지연되어 일선 정부기관 및 소비자들의 혼선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행 “畜産物の加工基準및成分規格”, “畜産物등의表示에관한基準” 등과 같은 축산물관련 규정으로는 해마다, 수시로 변화하는 축산식품의 유형 및 업종 다양화에 따른 민원사항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公衆衛生上 畜産物危險의 事前豫防 및 危險發生時 迅速하고 效率的인 統制를위한 體系의 構築이 未洽하다.

리스테리아 오염으로 인한 미국산 소시지 회수 사건 등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구축되지 않아 다이옥신등 각종 有害物質에 대한 危險分析(Risk Analysis)으로 사전에 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하게 공중위생상 위해를 찾아낼 수 있는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미국산 소시지 회수, 벨기에산 다이옥신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즉각 기준으로 따를 수 있는 긴급대처 표준요령(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SOP)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되어 정부는 현재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발생시 따를 기본지침이 되는 SOP를 작성중에 있다.

中央畜産物衛生檢査機關인 國立獸醫科學檢疫院과 畜産物 衛生管理 執行機關인 地方自治團體간의 業務協助體系가 脆弱하다.

검역원은 중앙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며 특히 지난 1999.12.31 “行政權限의委任및委託에관한規定”(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금까지는 농림부가 수행했던 畜産物の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 畜産物の 衛生等級, 畜産物の 表示에 관한 基準, 輸入畜産物の 檢査 및 國內의 檢査機關의 認定, 畜産物 營業者에 대한 畜産物 檢査 結果 및 수출입 實績 등의 報告命令과 營業場의 出入 檢査 收去,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指定, 畜産物에 대한 押留 廢棄, 動物用醫藥品(백신포함) 인허가 및 動物藥品 製造 輸入業體 指導 監督 등의 업무가 검역원으로 移管됨에 따라 말 그대로 축산물위생업무에 관한 實質的 執行機關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農林部는 순수한 政策機能과 法令業務만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검역원이 현재는 2급 중앙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도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검역원은 이러한 권한이 없어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위생관리체계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결국 검역원과 시·도간에 有機的인 業務協力體系를 構築함으로써 해결해야만 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의업계 모두는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갖고 관련업무 수행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2. 돼지콜레라 根絶對策

① 推進成果

1999년도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사항인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양돈농가를 포함한 민관 모

두가 바쁘게 보냈던 한해이다.

1999년도를 열면서 농림부장관이 직접 정한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라는 표어가 정부의 공문서를 필두로 合同談話文에, 각종 弘報教材와 리후렛에, 관련업체의 현수막에, 전문지 광고문에, 사료 동물약품 포장지에 실리면서 요원하게 느껴졌던 근절대책이 궤도에 올라 추진되었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난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농가가 짧은 기간내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여 豫防接種을 철저히 하고 양돈관련 단체와 업계가 근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결과로 보며, 그동안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過怠料, 移動制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농가, 공직자, 도축업 영업자 등 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

특히, 지난 5월 축협, 養豚協會, 飼料協會, 獸醫師會, 動物藥品協會, 肉類輸出入協會 등 양돈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돼지콜레라撲滅非常對策本部”의 시군 방역요원들이 정부의 도축장 혈청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중심으로 지난 10월부터 10천여 농장을 방문, 91천두는 채혈하여 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아직까지도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를 색출하여 指導·啓蒙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실질적인 예방접종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더러 선진국 형태의 민간방역 가능성을 예견케 한 성과라 본다.

그러나 8월 용인지역에서 돼지콜레라 재발생시 발생원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단 한 마리의 돼

지라도 豫防接種이 누락되거나 방역관리가 부실한 농장에서의 돼지의 구입, 농장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淸淨化 目標달성을 위해서는 根絶對策의 중단 없는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농림부는 상기 대책추진 점검을 위해 검역원에 지역담당관(180명)을 지정하여 現地點檢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對策狀況室(3개반) 운영하여 전 양돈농가에 대한 電算化作業을 완료하고, 일본 동향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일본정부 및 업계, 농가의 동향 파악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관련협회, 언론사, 양축농가 등 축산업계가 총망라된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가 민간주도로 설립되어 民間防疫技能을 적극 활성화하게 되었으며, 동본부는 전국 시 군에 방역요원 103명을 배치하고, 농장 採血檢査를 실시하는 등 돼지콜레라撲滅事業에 크나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그간의 根絶對策 推進體系를 보완·재정비하여 시 군 단위의 방역행정 및 민간단체 기능을 市長·郡守 責任하에 總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강도높은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강도높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예방 접종명령” 개정 및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정하였고, “私法警察管理의職務를행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을 개정(’99.12.28)하여 2000. 6. 1부터는 가축방역관이 私法警察權을 갖게 됨으로서 강력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向後 推進方向

돼지콜레라 根絶對策은 農林部 重點推進施策이다. 事業推進 體系에 있어서 '99년 10월 보완한 根絶對策 推進 2段階 強化對策에 따라 금년도에도 시·군 단위로 시장·군수 책임을 지고 방역행정 및 민간단체 기능을 총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農林部, 檢疫院, 市道家畜衛生試驗所는 시·군을 중심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시·군의 農業技術센터, 非常對策本部 防役要員, 共同防役事業 實施團, 公獸醫, 地域畜協, 養豚團體, 輸出業體는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사업을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토록 할 것이다. 또한 돼지콜레라 발생시 시·군 전체 농가를 수출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추진하고 비발생 지역 선언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시·군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 豫防注射은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이어 100두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쿠폰제를 이용 100% 예방약을 지원해주고 10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公獸醫,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등 豫防接種 要員을 동원하여 豫防接種을 실시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 재발생 우려지역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경기 용인, 충남 논산 등 과거 5년 이내 발생한 지역, 養豚密集地域, 免疫形成率과 농가 인식도가 낮은 시·군 20개소를 지정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地域擔當官을 중점 배치하여 抗原·抗體檢査를 확대하고 週期的인 點檢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장 血清檢査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도축장 중심의 혈청검사 시스템을 전환하여 소규모 사육농가, 멧돼지·흑돼지 사육농가, 도축장 혈청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우선으로 農場採血檢査를 확대 실시하여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예방주사를 하지 아니한 농가의 過怠料도 계속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채혈 검사에 필요한 인력은 비상대책본부의 民間防疫要員과 금년도 신설된 家畜衛生試驗所의 防疫補助員을 활용할 것이며, 도축장 혈청검사도 검사빈도가 높고 免疫形成率이 높은 수출용 돼지의 채혈 물량은 대폭 축소하는 반면 수출용 도축검사를 하는 검역관이 시도 검사원의 내수용 돼지 채혈업무를 협조토록 할 것이다.

農場 出入車輛 消毒 등에 대한 遮斷防疫을 강화한다. 수의과학검역원의 地域擔當官이 주체가 되어 도축장의 家畜輸送車輛 消毒施設 운영실태 점검 및 미운영 업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가에서도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사료·약품수송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계몽을 하고 소독약품도 대책본부 防疫要員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弘報·教育強化이다. 돼지콜레라 홍보와 농가교육은 비상대책본부를 주축으로 지방 순회교육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고 전문지를 통한 광고와 캠페인 전개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시·군 단위의 防役協議會 개최를 정례화하고 지역담당관의 현지 방문시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弘報·教育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돼지고기 輸入衛生條件 強化를 대비한

效率인 對應戰略 講究이다.

양국간의 기술교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한 우호적 대응을 떠나가면서 國際獸疫事務局(OIE)에서 제정한 지침·기준·권고사항의 적용 및 평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검역원에 설치된 “日本動向調査班”의 운영을 강화하여 일본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99.12월 제주도의 돼지콜레라 淸淨化 宣布를 기점으로 제주도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도서지역과 사육두수가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예방접종 중지와 淸淨化 宣言을 추진할 계획이다. 市郡 推進狀況에 대한 定期的인 持續的 點檢이다. '99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수의과학검역원의 地域擔當官으로 하여금 전국 시 군을 대상으로 예방약 공급실적, 예방접종율, 소규모 농가관리, 防疫協議體 運營, 教育·弘報實績 등을 평가하게 한 후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군에 대하여 농정시책에 반영,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다.

금년부터 家畜防疫制度가 달라진다.

첫째, 家畜傳染病豫防法改正('99.12. 정기국회 의결)으로 2000. 3. 1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으로 는 아래와 같다.

가축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축산관련 민간 단체의 소속 직원을 家畜防疫補助員으로 위촉하여 해당 防疫補助員이 농장에 출입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民間防疫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장에서의 가축전염병 발견 申告義務者의 범위에 현행 해당 농장의 축주와 가축을 진료한 수의사외에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하여 初動防疫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隔離·抑留·移動制限命令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 사육시설의 閉鎖나 6월 이내의 기간동안 家畜飼育制限 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의 가축을 운송해 주거나 도축하여 준 가축운송업자와 도축업 영업자 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營業停止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등의 탈법적인 이동과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축방역 업무중 豫防注射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경우 농가가 그 費用의 一部를 負擔할 수 있도록 하여 民間 自律防疫의 活性化를 도모토록 하였다.

둘째, 防役措置 違反農家에 대한 申告褒賞金制度 施行으로 예방접종 미실시, 이동제한 위반, 땀이 돼지를 구입하는 방역관리 위반농가(업소)를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申告褒賞金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금년도 돼지콜레라 事業費가 增加하였다.

금년도 돼지콜레라 방역사업비는 '99년도 보다 확대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家畜衛生試驗所의 防疫補助員 급여, 民間防疫團體에 대한 家畜防疫비의 補助, 豫防接種 施術費 豫算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國費, 地方費, 畜産發展基金을 포함한 금년도 돼지콜레라 사업비는 168억원으로 전체규모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지만 사업이 종료된 도축장 소독시설과 공수의 수당예산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35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었다.

3. 原乳檢査公營化

① '99年 推進實績

酪農振興法 第14條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의 公正性 및 透明性을 높여 원유공급자인 낙농가와 원유수요자인 유업체간에 乳貨價格을 둘러싼 분쟁을 없애고 검사결과를 효율적으로 原乳衛生管理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原乳檢査公營化가 1999년 일부 시·도부터 우선 실시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原乳檢査公營化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原乳檢査公營化實施要領(農林部告示 第1999-38號, '99.7.6.)을 고시하였고, 原乳檢査公營化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도 원유검사기관에 원유검사장비구매 예산을 지원하였다.

原乳檢査公營化는 集乳一元化 우선 시범실시지역인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에 우선 실시('99.6.)하였고, '99.12.1 집유일원화 지역확대에 따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및 경상남·북도에 확대시행하고 있다.

② 미흡한 점

첫째, 집유일원화 미 실시 지역(충청남도)은 검사공영화 추진이 지연하며 집유일원화 미참여 유업체는 原乳檢査公營化 施行을 관망하고 있는 추세여서 확대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原乳檢査公營化가 신규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충원 및 추가예산 지원없이 실시됨에 따라 업무량 증가에 따라 原乳檢査實施機關(市·道 家畜衛生試驗所)의 檢査人力 및 材料費 등이 부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수행에 지장을 초

래하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는 원유검사결과가 유대가격 지급시의 기준자료로서만 활용되고 있고 세균수등이 검사결과에 따른 酪農家의 衛生指導 監督體系가 미흡한 실정이다.

③ 向後 推進方向

앞으로 農林部는 原乳檢査公營化를 시행함에 있어 2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첫째는 원유검사 결과의 公正性과 透明性을 확보하여 낙농가 및 수요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둘째는 미참여 유업체에 대한 原乳檢査公營化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國立獸醫科學檢疫院에서 주기적으로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비에 대한 표준화를 점검하고 표준용액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검사장비 운용, 유지 및 검사인력의 적정배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검사공영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原乳檢査機關에 대한 指導·監督을 強化할 것이다.

검사공영화 미참여 유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입회검사 등 시·도지사 책임하에 公正性確保方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모든 유업체가 原乳檢査公營化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原乳檢査公營化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원유검사장비 구매 예산 및 검사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2000년 국비지원으로 세균수검사기 등 검사장비 4종 16점 808백만원을 지원하고, 시·도 畜産物衛生檢査機關에 지원하는 돼지콜레라 방역업무 지원 인력 중 필요시 원유검사 보조토록 하였다. 전문적인 검사기술자 확보로 검

사결과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장비 운영능력 배양 및 전문적인 기술습득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酪農振興會의 酪農家 지도활동을 강화토록 유도하여 원유검사결과가 유질향상을 위한 낙농가 衛生指導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HACCP 制度의 施行

① 背景

최근 몇년 사이 병원성미생물(대장균 O-157:H7 등), 항생물질 등 공중보건상 위해요인이 없는 高品質의 安全畜産物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선호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安全畜産物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축산업계의 최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屠畜檢査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衛生檢査만으로는 安全性 確保가 未洽하므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축산물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生産段階부터 消費段階까지 (Farm to Table) 축산물의 原料生産 加工 流通 販賣의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公衆保健上 危險要因을 미리 파악하여 事前에 豫防하는 一貫된 衛生管理體系 構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WTO/SPS 협정에 의거 축산식품의 국제교역시 國際食品規格委員會(Codex)의 국제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동기준중 하나가 危害要所重點管理制度(HACCP)로서 Codex는 국제교역되는 식품은 생산과정에서 동제도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축산업계도 대외경쟁

력이 있는 축산물의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여야만 한다.

1998년 농산물수출총액 16억달러중 돼지고기가 3억달러로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세계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그리고 최대 농산물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축산식품의 수출에 있어서 새로운 障礙物로 등장한 것이 安全性 問題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安全性이 확보되지 않은 축산물은 輸入을 禁止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소고기는 2000년 4월부터, 돼지고기는 2002년 4월부터 HACCP 제도를 전면 적용함과 동시에 자국에 수출되는 식육도 동제도의 적용하에 생산되지 않은 것은 수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12.13 畜産物加工處理法 改正시 HACCP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여 屠畜場 및 畜産物加工場에 HACCP 실시 규정하고 있고, 동제도의 세부실시방안은 農林部告示로 규정하고 있다.

② 主要 推進內容

屠畜場은 2000. 7. 1부터 2003. 7. 1사이 도축장 도축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의무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도축장은 공중위생상 위해요인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도축장 위생관리 성공여부가 식육의 위생 및 안전성을 보증하는 核心要所이기 때문이다.

畜産物加工場은 식육가공장(햄류 소시지류) 및 유가공장(우유 발효유 자연치즈 가공치즈) 우선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정부가 당해 HACCP 적용 업소를 認證하는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HACCP 適用對象品目を 擴大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국민다소비 축산물가공품을 중심으로 HACCP 適用技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HACCP가 적용되고 있는 작업장은 屠畜場이 4개소이고, 畜産物加工場은 31개소로 乳加工場이 28개소이고, 肉加工場이 3개소이다.

정부는 2000. 7. 1부터 HACCP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屠畜業所를 지원하기 위하여 HACCP 衛生施設資金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HACCP를 도축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위생시설 10종을 설정하고 이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업체수는 '99년 10개소, '00년 15개소, '01년 15개소 및 '02년 10개소로 1개 업소당 350백만원을 5% 利率로 5년 据置 5년 償還 條件으로 融資해준다.

또한 정부는 HACCP 適用對象業體가 自體的으로 HACCP 計劃을 樹立 施行하는데 있어 인적 자원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들 업체를 돕기 위한 HACCP 諮問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韓國食品開發研究院 등 專門機關과 당해 도축장간에 諮問用役契約을 체결토록 하여 업체가 보다 쉽게, 보다 효율적인 HACCP 計劃을 樹立, 實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HACCP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政府衛生當局 및 民間業界에 HACCP 專門家가 부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HACCP 施行體系 構築이 遲延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림부, 검역원, 시도 등 위생기관에 HACCP 擔當者 指定하여 相關업무를 전담케 하였으며, 이들을 집중적인 HACCP 教育 訓練을 통하여 HACCP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 있다. 금년 2월 말부터 3주간 미국정부에서 실시하는 HACCP 세미나에 이들을 파견하는 것도 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금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양성된 국내의 HACCP 專門家를 통하여 相關업체를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이미 검역원에 구성되어 운용중인 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팀과 연계하여 수행된다.

畜産物加工處理法令에 의거 HACCP이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도축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義務適用되나, 그동안 도축업체는 HACCP를 도축장에서 실제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細部指針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農林部는 1998.10월부터 1999.6월까지 농림부, 검역원, 한식연, 축기연, 5개 도축업체 등의 HACCP 전문가로 구성된 “屠畜場 HACCP 實務作業班”을 구성하여 도축장에서 HACCP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細部指針들을 개발하였고 이들을 묶어 “屠畜場 HACCP 適用 매뉴얼”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단체, 相關업체 등에 제공하였다.

③ 向後 方向

HACCP 시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는 동제도를 시행하



는데 필요한 基本的 土臺가 虛弱하다는 것이다. 즉, HACCP 제도는 당해 작업장이 GMP 수준이상의 훌륭한 作業條件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해 작업장이 상당수준의 자체위생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自體衛生管理基準(SSOP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屠畜場 施設 및 위생수준은 先進國 및 國際基準과 비교하여 볼 때는 상당한 乖離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점이 국내에서 HACCP 제도의 조속한 구축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畜產物生産業所가 畜產物加工處理法에 따른 작업장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적합 작업장에 대한 行政措置를 強化할 計劃이다.

또한 작업장별 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여부 現地點檢하여 형식적으로 운용하거나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도 行政指導 監督 및 行政處分을 強化할 것이다.

정부에서 금년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HACCP 업무중 또 하나는 畜產物別 HACCP 實行모형을 보급하는 것이다. 도축장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99년도에 “屠畜場 HACCP 實務作業班”에서 마련한 도축장별 HACCP 적용 기본모형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고,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현재 HACCP 기본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년중에 필요성이 큰 품목부터 우선하여 韓國食品開發研究

院 또는 韓國保健産業振興院 등을 통하여 기본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HACCP가 의무 적용되는 도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檢疫院에 屠畜場 HACCP 豫備適用을 위한 特別作業班 구성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HACCP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專門家의 現地 指導 및 問題點 發見시 당해 업체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동 작업반은 이미 '99. 7월부터 검역원, 한식연 등의 HACCP 專門家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畜產物加工品의 경우 금년도 HACCP 정책의 주요 방향은 適用對象 品目を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HACCP 管理 評價基準이 없는 베이컨, 분쇄 육가공품, 버터, 분유 등 國民多消費食品이면서 HACCP 적용의 필요성이 큰 품목에 대한 관리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기적용품목 및 신규 적용 품목에 대한 HACCP 적용 기본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끝으로 農林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HACCP에 대한 教育 弘報의 強化이다. HACCP 제도는 畜產物生産者가 자기가 생산한 畜產物의 衛生管理를 책임지는 自主的 衛生管理技法이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政府 衛生機關, 關聯團體, 畜產物生産 流通業所, 消費者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제도의 必要性 및 重要性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農林部는 다양한 弘報 教育 媒體를 통하여 HACCP에 대한 教育 弘報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Ⅲ.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農林部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農林部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 독자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현재 농림부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를 중심으로 關聯業界, 消費者團體 등에서 畜産食品의 衛生管理部署를 둘러싸고 논란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農林部가 畜産食品등에 대한 위생업무를 담당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協助를 구하고자 한다.

축산식품을 포함하여 農産物의 安全性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 혹시 농산물의 위생 및 안전문제는 농산물도 식품이니까 食品醫藥品安全廳에서 담당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農産物(畜産物 포함)의 安全性 確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原料生産段階이다. 채소 또는 과일에서의 農藥汚染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까? 당연히 채소재배 또는 과일재배 단계이다. 이때 농약을 安全使用 守則에 따라 사용하면 農藥問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단계를 누가 관장합니까? 農林部다.

식육의 衛生上 問題는 거의 대부분 動物藥品등 殘留物質汚染問題와 살모넬라등 病源性微生物汚染 問題이다. 식육중 잔류물질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動物藥品이 첨가된 飼料를 비육후기(출하직전)에 급여하거나 動物藥品을 오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農場에서다. 農場을 누가 담당하는가? 농림부다. 병원성미생물오염 문제는 주로 도축시 분변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등 屠畜段階가 가장 문제된다.

도축장을 누가 담당하는가? 農林部다.

따라서 畜産物安全性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계를 實質的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농림부다. 여기에 왜 農林部가 農産物安全性業務를 擔當해야 하는지 論理的 根據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農林部를 農林水産食品部로 組織 改編하고 모든 食品管理業務를 農林部로 統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식품중에서 公衆衛生上 危害를 일으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農産物(특히, 畜産物)이며, 食品管理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 바로 위생문제이므로 農産物을 효과적으로 衛生管理할 수 있는 부서에서 식품위생관리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최근의 國際的 추세이다. 캐나다 및 덴마크가 대표적인 최근 사례이다.

需要者 中心의 사회에서 우리 農業人-農業이 살 수 있는 길은 安全하고 衛生的인 農産物을 生産 供給하는 것이다. 價格 競爭力도 중요하지만 安全 競爭力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庚辰年 龍의 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 모두의 家庭에 幸福이 깃들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祈願하며, 農林部등 政府獸醫衛生機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 協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